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4 선고 2020가단5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임선영, 최동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치동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9.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618,5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18,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06. 4. 20.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4. 24. “C는 원고에게 8,810,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6차8941).
- 2)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원고는 다시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2. 29. “C는 원고에게 8,810,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5.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820).

나. C와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어머니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6.경 사망하였고, C는 망인의 재산을 누나인 피고 등과 공동상속하였다(C의 법정상속분 1/4).
- 2) 그런데 C는 그 무렵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 1)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E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원금 14,145,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 조세 등 채무(주민세 38,610원, 국민건강보험료 617,11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협의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260,541,040원 정도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최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협의 당시 G(개명 전: H)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G는 2016. 9. 5.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 종료 후 2020. 5. 8. G에게 위 8,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③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281,558,01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50,389,502\text{원} = (281,558,010\text{원} - 8,000\text{만 원}) \times \text{C의 상속분 } 1/4, \text{원 미만은 버림}$ 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37,618,559원²⁾을 한도로 이 사건 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37,618,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망인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망인이 아닌 피고가 변제하였으므로 이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채무를 망인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1) 이 사건 협의일까지의 금액은 41,675,117원이다.

2) 원금 8,810,68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앞서 본지급명령 기재 비율에 의함) 29,998,580원의 합계 38,809,26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